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1.

발 의 자 : 정일영 · 조인철 · 유동수
강준현 · 최민희 · 서영석
황명선 · 윤후덕 · 권향엽
허영의원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도록 하고,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반적인 주민소환 요건과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신속하게 묻는 데 한계가 큼.

이에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,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

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2 등).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임기 초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특례)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명인 수는 같은 호에서 정한 서명인 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

로 임기를 개시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 제8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 기간)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	제7조의2(임기 초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특례)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명인 수는 같은 호에서 정한 서명인 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. 제8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 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제8조제

1. ~ 3. (생략)	<u>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1. ~ 3.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	---